

1. 지원대상

- 정산대상 : 2022. 1월 ~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
 - 셀러, 바이어, 수출물품이 명확히 확인되며 항공, 해상운송 및 국제특송 (EMS 제외)으로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운임 지원 (**※선착순 소급지원**)
 - 인코텀즈(INCOTERMS)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C, D조건에 한함
 - * C조건(CFR, CIF, CPT, CIP), D조건(DAP, DPU, DDP) 해당
 - 두 조건 모두 국내/외 내륙운송비, 관·부가세,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운임(invoice 상 freight 부분)만 해당하므로 신청서에 지원금액 기재시 주의 (단, 국제특송은 총액 기준)
 - ** 수출신고필증, B/L(선하증권), SWB(해상화물운송장) 등 증빙서류 상 거래조건 표기 및 수출자가 신청기업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
 - 지원한도 : 발생한 해외운임 합산액의 70% 지원 (1사 200만원 한도)

2. 신청방법

-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(<http://trade.busan.go.kr>) 가입 및 로그인
- ② 왼쪽 상단의 '무역대응력' → '부산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' 선택
- ③ 화면 하단 '참가신청'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문서 업로드

※ 중 요

- ① 모든 제출서류가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순위 배정
 -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착순에서 제외
- ② 개별 바이어의 발주가 아닌 해외판매 플랫폼의 물류창고 입고 인정 불가
- ③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지역 수출기업은 해외운임 합산액의 100% 지원
 - 단,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며 5월 13일까지 신청완료할 것

(제출서류 : 다음페이지 참조)

3. 제출서류

구 분	증빙서류
공 통 제 출	1. 사업신청서 (붙임2. 참조) 2. 사업자등록증 3. 공장등록증 (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명세서 외 인정 불가) 4. (회사명의)통장사본 5. (2019~2021) 3년간 재무제표 - 2021년 재무제표 없을 경우 2018~2020년도 제출 가능 6. 고용보험가입자명부 7.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위택스) 8. (2021년) 수출실적증명서
① 항공 및 해상운송	A-1. 수출신고필증 A-2. (운송사 발행)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- 국내외 내륙운송 및 관/부가세 항목 구분 가능할 것 A-3.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A-4.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A-5. 선하증권(B/L) 또는 운송장(Sea Way Bill) - 항공은 Airway Bill A-6. (수출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받은 것) 수출계약서 (또는 발주서)
② 국제특송 (EMS 제외)	B-1. 운송장 B-2. 인보이스 또는 세금계산서 B-3.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B-4. 수출신고필증(보유시) B-5. 수출계약서 (또는 발주서)

* 제출서류 업로드시 가급적 상기 증빙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

** 폴더를 2개(1. 공통서류, 2. 운송서류)로 구성하여 위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넣어서 압축파일로 업로드할 것

4. 문 의 :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한지원 팀장 (051-993-3302)